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5. 8 선고 2023나12010 판결 [건물명도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5. 8 선고 2023나1201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171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민혁

변론종결 2024. 4. 3.

판결선고 2024. 5. 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171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인천 서구 D의 11,860㎡ 중,

가.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10㎡ 토지
지상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위치한

①적치물 28㎡, ②적치물 8㎡, ③적치물 65㎡, ④적치물 64㎡, ⑤적치물 9㎡, ⑥적치물 9㎡,

⑦적치물 8㎡, ⑧적치물 55㎡, ⑨적치물 22㎡, ⑩적치물 7㎡, ⑪적치물 6㎡, ⑫적치물 41㎡,

⑬적치물 15㎡, ⑭적치물 7㎡, ⑮적치물 2㎡, ⑯ 적치물 297㎡, ⑰ 적치물 5㎡, ⑱ 적치물 8㎡, ⑲

적치물 3㎡, ⑳ 적치

물 1㎡, ㉑ 적치물 71㎡, ㉒ 적치물 1㎡, ㉓ 적치물 1㎡, ㉔ 적치물 1㎡를 각 수거하고, 나. 별지

제1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㉕ 부분 3,795㎡ 토지 지상 별지 제3-1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위치한 ①건물 578㎡, ③건물 431㎡, ㉖ 건물 448㎡, ㉗ 건물 444㎡, ㉘

건물 15㎡를 각 인도하고, 위 선내 부분 지상에 위치한 ②적치물 12㎡, ④적치물 63㎡, ⑤적치물

4㎡, ⑥적치물 5㎡, ⑦적치물 1㎡, ⑧적치물 5㎡, ⑨적치물 2㎡, ⑩적치물 4㎡, ⑪적치물 1㎡,

⑫적치물 2㎡, ⑬적치물 1㎡, ⑭적치물 1㎡, ⑮적치물 1㎡, ⑯ 적치물 2㎡, ⑰ 적치물 10㎡, ⑱ 적치물

30㎡, ⑲ 적치물 6㎡, ㉑ 적치물 5㎡, ㉒ 적치물 6㎡, ㉓ 적치물 37㎡, ㉔ 적치물 16㎡를 각 수거하고,

다. 위 나항 기재 ㉕ 부분 토지 지상 별지 3-2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위치한 ㉙적치물 75㎡, ㉚적치물 90㎡, ㉛적치물 37㎡, ㉜적치물

31㎡, ㉝적치물 141㎡를 각 수거하고,

라.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10㎡ 토지,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 3,795㎡ 토지, 별지 제4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㉕ 부분 5,455㎡ 토지를 각 인도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적치물의 수거, 각 건물 및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별지 제4도면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㉕ 부분 5,455㎡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㉕ 부분 5,455㎡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9행 ‘위임받은 원고에게’ 뒤에 ‘무상 사용기간 종료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8행 ‘인도할 의무가 있다.’ 뒤에 ‘(주위적으로 무상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예비적 청구원인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1)’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아래서 제6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자인(이하 ‘이 사건 점유 자백’이라 한다)하였던 2021. 5. 10.자 준비서면에 반하는 내용의 2022. 3. 18.자 준비서면을 함께 진술함으로서, 이 사건 점유 자백을 철회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을 제공한 것은 F박물관 내지 주식회사 G이지 피고들 개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점유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점유 자백을 철회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2022. 3. 18.자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점유 자백을 철회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2021. 5. 10.자 준비서면 중 이 사건 점유 자백에 대한 부분은 진술하지 않는다거나 2022. 3. 18.자 준비서면과 배치되는 부분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들은 그 이후 2022. 7. 13.자 준비서면(제6면), 2022. 10. 20.자 준비서면(제3면)에서 또다시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의 이용을 허락받은 것이다.’라며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인진술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22. 3. 18.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점유 자백이 철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점유 자백을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F박물관 및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의 무상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점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점유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실제 이 사건 건물들 내부의 점유 현황, 용도 등이 밝혀지지도 않았다), 피고들이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점유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5행 ‘어려운 점’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박물관 건립 추진 및 운영·관리’ 역할(제3조 제1의 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에게 F박물관 건립 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한 계속적 장소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사에서 부지사용 계획이 있어 반환 요청시 즉시 반환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하였다가 위 조건에 따라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4호 단서 사유(원고의 요청 내지 사정에 따라 협약이 만료일 전 종료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 제10면 제7행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30, 32, 33,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고, 협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만 5년씩 자동 연장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만기일(2023. 5. 31.) 전인 2023. 2. 28.과 2023. 3. 9. 피고들에게 ‘기간만료로 이 사건 협약이 종료되고,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 기간 중 원고의 방해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 사용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2019. 3. 28.경 실시된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설치한 조형물 중 일부에 부식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위 체험학습장 부지 인근에 안전펜스의 설치가 필요하였던 점, ④ 원고가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한 펜스가 해당 부지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거나 조형물의 유지·관리를 저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4호에서 ‘원고의 요청 또는 원고의 사정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때에는 원고의 비용으로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F박물관이 지정한 장소로 조형물(이 사건 협약에 따라 설치한 75점의 조형물로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1호에 의할 때 이 사건 협약 별첨 목록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을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이 원고의 요청 내지 사정에 따라 만료기간 전에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설치한 조형물의 이전의무가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 반환의무보다 선이행(내지 동시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사용권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3토지의 인도청구를 제외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기우중, 판사 이형원, 판사 신옥영

별지

1) 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점유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항변에 대한 판단 단계에서 ‘이 사건 협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